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울산광역시 등 [별표] 기재 4개 지방자치단체 ② 경산시
조 치 기 관	① 울산광역시 등 [별표] 기재 4개 지방자치단체 ② 경산시
내 용	

1. 업무 개요

울산광역시 등 [별표] 기재 4개 지방자치단체 및 경산시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위 조례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 10m³ 이상 증가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부담금 단가 산정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사용 조례¹⁰⁶⁾에 따르면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시설용량’에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산정한

106)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 등에 따라, 파주시는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등에 따라, 익산시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등에 따라 부담금 산정·공고함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울산광역시가 2014. 3. 21.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공고한 이후 4년이 지난 2018. 5. 18. 현재까지 농소하수처리시설 등 1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추가로 투입된 사업비 총 654,335백만 원¹⁰⁷⁾과 연도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등 [별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족 부과 명세”와 같이 울산광역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간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공고하지 않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등에 따라 변경된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과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공고하고 있었다.

그 결과, 울산광역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담금을 산식에 따른 산출액 256,803백만 원보다 119,660백만 원만큼 적게 징수하여 하수도 설치비용이 하수도 사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었다.

3. 부담금 산정기준 관련 규정 미비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부과요건,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107) 울산광역시는 2014년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면서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성, 원인자 부담 최소화 등의 사유로 2012년 이후 신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등은 반영하지 않고 생산자 물가상승률(6%) 정도만 인상함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편, 경산시는 2007. 8. 10. 경상북도로부터 개별건축물에 대한 오수량 산정 및 부과시기(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를 각각 준공일 및 인허가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명시한 「하수도 조례기준」이 첨부된 “하수도사용조례 기준 개정 알림” 공문(수질보전과-10020)을 받았다.¹⁰⁸⁾

그런데 경산시는 2009. 1. 12. 「하수도 조례기준」을 반영하여 「경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산정기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현재까지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관내 ㉠읍 ㉡리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하여 오수량 산정기준에 따른 부담금 변화를 표본 검토한 결과, 경산시는 당초 건축허가일 기준(2014. 11. 2.)으로 부담금 428백만 원을 산정·부과하였으나 사용승인일 기준(2017. 10. 12.)으로 부담금을 재산정할 경우 부담금 단가 증가로 건축허가일 기준보다 158백만 원(37%) 많은 586백만 원으로 산정되는 등 산정기준을 건축허가일과 사용승인일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고 있어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부담금 산정기준¹⁰⁹⁾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108) 환경부는 2007. 8. 8. 경상북도에 「하수도 조례기준」이 포함된 공문(생활하수과-2365)을 시달하였고, 경상북도는 2007. 8. 10. 이를 각 시·군에 다시 시달함

109) 경산시는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267개의 개별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관행에 따라 산정기준을 건축허가일로 하여 부담금 총 9,384백만 원을 산정·부과함

관계기관 의견 울산광역시 등 [별표] 기재 4개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적용 등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투자 사업비 및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산시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등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단위단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으로 추가로 투입된 사업비와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남양주시장은 앞으로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등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으로 변경된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제대로 적용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산정하는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과주시장은 앞으로 「과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등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으로 변경된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산정하는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익산시장은 앞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등에 따라 매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공고하는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산시장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족 부과 명세

(단위: 원/㎥, 백만 원)

관할 관서	연도	실제 부과 금액		재산정 금액		부족 부과 금액 (B-A)	비고
		단위단가	부과금액(A)	단위단가	부과금액(B)		
계(4개 관서)		-	137,143	-	256,803	119,660	-
울산광역시	소계	-	105,203	-	223,631	118,428	-
	2014	1,421,000	26,943	2,048,327	55,188	28,245	2014년 이후 부담금 단위단가미산정 (추가된 사업비 미반영, 연평균 생산자물가상승률 미반영)
	2015	1,421,000	24,954	2,218,657	55,364	30,410	
	2016	1,421,000	21,764	2,170,893	47,247	25,483	
	2017	1,421,000	31,542	2,087,119	65,832	34,290	
남양주시	소계	-	16,195	-	16,739	544	-
	2014	1,669,110	3,174	1,640,620	3,365	191	추가된 사업비 및 시설용량 미반영, 연평균 생산자물가상승률 산정 오류 (기하평균이 아닌 산술평균 적용)
	2015	1,659,400	5,104	1,632,230	5,313	209	
	2016	1,584,230	3,858	1,566,740	3,811	-47	
	2017	1,552,340	3,649	1,671,720	3,827	178	
	2018년 2월까지	1,552,340	410	1,671,720	423	13	
파주시	소계	-	7,372	-	7,588	216	-
	2015	2,219,000	925	2,330,000	971	46	2015년 이후 부담금 단위단가미산정 (추가된 사업비 미반영, 연평균 생산자물가상승률 미반영)
	2016	2,219,000	2,947	2,263,000	3,041	94	
	2017	2,219,000	2,997	2,251,000	3,062	65	
	2018년 2월까지	2,219,000	503	2,336,000	514	11	
익산시	소계	-	8,373	-	8,845	472	-
	2014	1,320,310	3,344	1,427,434	3,615	271	2010년 이후 부담금 단위단가미산정 (추가된 사업비 미반영, 연평균 생산자물가상승률 미반영)
	2015	1,320,310	1,321	1,419,873	1,421	100	
	2016	1,320,310	1,692	1,362,867	1,746	54	
	2017	1,320,310	1,450	1,338,084	1,470	20	
	2018년 4월까지	1,320,310	566	1,384,365	593	27	

주: 남양주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매년 2월에 산정·공고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